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 일부개정(2021. 6. 8.)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(제15조의2 신설)를 지정·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, ‘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‘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’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(안 제7조의8항 신설)
- 나.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(안 제7조의9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(이하 “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·시·군·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의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처·기관 간 공유·활용을 통한 복지 및 일자리 연계강화를 위해 교육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으로 구성·운영한다.
- ② 국가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7조의8(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)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(이하 “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·시·군·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	
<u><신 설></u>				
		제7조의9(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)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처·기관 간 공유·활용을 통한 복지 및 일자리 연계강화를 위해 교육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으로 구성·운영한다. ② 국가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	
연 락 처	044-203-6778, 6777